

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(제정 2004. 3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주대학교 학칙」과 「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에 따라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단(이하 “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이 규정은 본교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
2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 기관의 행·재정 지원
4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,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
5. 본교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
6.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
7. 학교기업 운영 및 관리 <신설 2012.11.20>
8.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<신설 2012.11.20>
9. 전주대학교 수퍼스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<신설 2017.02.24>
10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

제2장 조직

제4조(행정지원실) ① 협력단에는 산학협력지원실, 산학연구지원실을 둔다.<개정 2010.6.17., 2015.11.1., 2018.3.1., 2019.9.1., 2022.12.14>

② 산학협력지원실에 전략기획팀, R&D기획팀, 기술사업화팀, 재무회계팀, 감사팀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2.12.14>

③ 산학연구지원실에 학술진흥팀, 연구관리팀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2.12.14>

제5조(산학협력단 교직원) ① 협력단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 임용하는 직원, 조교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협력단에서 임용하는 직원(조교, 연구원 포함)으로 하여금 협력단

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협력단에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관을 두며,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3.2.1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 부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여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·폐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산학협력단 및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7. 교외연구비, 간접연구경비, 학술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제8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사업단 및 학교기업

제9조(사업단) ① 협력단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과제별로 사업단을 둘 수 있다.

② 사업단에는 1명의 단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업단은 프로젝트별로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.

제9조2(학교기업) ① 협력단에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학교기업을 설치하고, 그 명칭과 사업종목 및 연계학부(과)는 [별표 제1호]에 따른다.

② 각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교지 내에 둔다.

③ 그 밖에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11.20.]

제9조3(수퍼스타어린이집) ① 협력단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대표사업자로서 수퍼스타어

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슈퍼스타어린이집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원장 및 교직원(교사, 조리원 등)을 임용한다.

③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02.24.]

제9조의4(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) ① 협력단은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하는 시·군·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 <개정 2023.9.2.>

②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 <개정 2023.9.2.>

[본조신설 2022.12.14.]

제9조의5(산학관커플링사업단) ① 협력단은 전라북도 지원 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 산학관커플링사업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각 사업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「산학관커플링사업 운영지침」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12.14.]

제9조의6(4단계 BK21 탄소융합혁신인재양성단) ① 협력단은 4단계 BK21 탄소융합혁신인재양성단의 수행하기 위하여 4단계 BK21 탄소융합혁신인재양성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사업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4단계 BK21 탄소융합혁신인재양성단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

제9조의7(공동기기센터) ① 협력단은 본교 구성원 또는 산업체(개인 포함)가 활용하는 공동관리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기기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

②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12.14.]

제9조의8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) ① 협력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12.14.]

- 제9조의9(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연구단)** ① 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연구단을 설치·운영한다.
- ② 연구단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HK+)연구단 운영규정」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12.14.]

- 제9조의10(국어문화원)** ① 협력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에 따른 국어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어문화원을 설치·운영한다.
- ②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국어문화원 규정」을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3.9.2.]

- 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, 「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」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12.14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6.23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9.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<개정 2021.8.20., 2022.8.31., 2023.3.29., 2023.6.23.>

학교기업 현황

번 호	학교기업의 명칭	사업종목	연계학과	비 고
1	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 센터	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(72919)	토목환경공학과 환경생명과학과	